



## 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2분기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통  
지

---

### 1. 관련

가. 결핵?에이즈관리과-317(2018.1.18.)호

나. 경기도 보건위행담당관-3156(2018.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지자체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본 예산으로는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목적 외 집행이 불가하며, 다른 사업 목적으로 집행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예산의 적정집행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센병관리 자치단체이전 분기별 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2분기	3분기	4분기
계	7,519,721	3,728,196	2,203,195	780,940	781,665
(4833-301-330-01)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	5,211,100	1,823,885	1,823,885	780,940	781,665
- 한센시설운영지원	2,716,889	951,864	951,864	405,220	407,941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2,493,486	872,021	872,021	375,720	373,724
·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1,991,456	697,009	697,009	298,717	298,721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502,030	175,012	175,012	77,003	75,003
- 유보액	725	-	-	-	-
(4833-301-330-03)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자본보조	2,308,621	1,904,311	379,310	-	-
-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	334,573	296,669	37,904	-	-
-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1,949,048	1,607,642	341,406	-	-
- 유보액	25,000	-	-	-	-

- 붙임. 1. 2018년도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분기별 교부계획 1부  
2. 2018년도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교부결정통지서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질병관리본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건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담당관),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 위생과장)

선임연구원 박수진 보건연구사 김성남 보건사무관 박평 결핵·에이즈관 신인식  
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전결 04/12  
고운영

협조자

시행 결핵·에이즈관리과-1702 ( 2018.04.12. ) 접수 생활보건과-8809 ( 2018.4.12.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 / http://cdc.go.kr  
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4층  
전화 043-719-7342 /전송 043-719-7339 / skysj003@korea.kr / 대시민공개

- 보조사업명 : 1-3.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기준보조율 : 5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2018년도 국고 예산	예산현액	1/4분기 교부액	2/4분기 교부액	3/4분기 교부액	4/4분기 교부액
계	552	502,030	502,030	175,012	175,012	77,003	75,003
서울	62	56,265	56,265	19,693	19,693	8,440	8,439
부산	74	67,155	67,155	23,504	23,504	10,073	10,074
대구			0				
인천	10	9,075	9,075	3,176	3,176	1,361	1,362
대전	6	5,445	5,445	1,906	1,906	817	816
울산	5	4,538	4,538	1,588	1,588	681	681
세종	1	908	908	318	318	136	136
경기*	33	31,037	31,037	10,164	10,164	6,353	4,356
강원	53	48,097	48,097	16,834	16,834	7,215	7,214
충북	40	36,300	36,300	12,705	12,705	5,445	5,445
충남	92	83,490	83,490	29,222	29,222	12,524	12,522
전북	12	10,890	10,890	3,812	3,812	1,634	1,632
전남	80	72,600	72,600	25,410	25,410	10,890	10,890
경북	17	15,427	15,427	5,399	5,399	2,314	2,315
경남	64	58,080	58,080	20,328	20,328	8,712	8,712
제주	3	2,723	2,723	953	953	408	409

\* 경기도 3분기 교부액 변경

(단위:천원)

국비	기존	변경	증감액	사유
	29,040	31,037	1,997	1명 전입 및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국비보조율(50→70%) 인상



- 세부사업명 : 한센병환자관리지원
- 기준보조율 : 50%, 70%, 100%
- 보조구분 : 경상
- 시·도별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 (명)	2018년도 국고 예산	예산현액	1/4분기 교부액	2/4분기 교부액	3/4분기 교부액	4/4분기 교부액
계	3,861	5,211,100	5,211,100	1,823,885	1,823,885	780,940	781,665
서울	62	56,265	56,265	19,693	19,693	8,440	8,439
부산	206	134,136	134,136	46,947	46,947	20,120	20,122
대구	20	38,010	38,010	13,304	13,304	5,702	5,700
인천	10	9,075	9,075	3,176	3,176	1,361	1,362
대전	6	5,445	5,445	1,906	1,906	817	816
울산	5	4,538	4,538	1,588	1,588	681	681
세종	31	32,174	32,174	11,261	11,261	4,826	4,826
경기	131	336,133	336,133	116,948	116,948	52,117	50,120
강원	53	48,097	48,097	16,834	16,834	7,215	7,214
충북	40	36,300	36,300	12,705	12,705	5,445	5,445
충남	103	97,833	97,833	34,242	34,242	14,675	14,674
전북	1,213	736,109	736,109	257,639	257,639	110,417	110,414
전남	380	776,805	776,805	272,834	272,834	114,207	116,930
경북	733	1,754,603	1,754,603	614,110	614,110	263,190	263,193
경남	865	1,142,129	1,142,129	399,745	399,745	171,319	171,320
제주	3	2,723	2,723	953	953	408	409
유보액)		725	72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1.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한센병관리사업 경상보조	112,530	56,265	56,265		

○ 보조비율: 50%(정률지원)

○ 사업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교 부 목 적: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을 위함

예 산 과 목: 일반회계(보건의료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33 한센병관리	301 한센병환자관리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56,265	19,693	19,693	16,87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8. 4.

**질병관리본부장**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1.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하오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보조 사업자: 서울특별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한센병관리사업 경상보조	112,530	56,265	56,265		

○ 보조비율: 50%(정률지원)

○ 사업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교 부 목 적: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을 위함

예 산 과 목: 일반회계(보건의료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90 보건	091 보건의료	4800 질병관리본부지원	4833 한센병관리	301 한센병환자관리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56,265	19,693	19,693	16,879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8. 4.

**질병관리본부장**